

大韓貿易振興公社와 海外建設協會와의 業 務 協 調 約 定

第 1 條 (目 的)

本 約定은 大韓貿易振興公社(以下 “甲” 이라 한다)와 海外建設協會(以下 “乙” 이라 한다)가 海外市場情報 및 技術情報의 相互交換과 諸般業務의 緊密한 協調를 通하여 海外建設의 輸出振興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 (情報資料의 交換)

- ①甲과 乙은 蒐集한 海外市場情報 및 技術情報를 相互無料로 交換한다.
- ②甲은 甲이 入手한 海外建設에 關聯된 情報中 乙이 必要로 하는 情報를 乙에게 提供, 支援한다.
- ③甲과 乙은 서로 必要로 하는 資料나 各種 刊行物을 交換한다.
- ④甲과 乙은 서로 備置한 圖書나 資料를 閱覽하거나 貸與할 수 있다.

第 3 條 (調 査)

①甲과 乙은 必要한 情報資料의 入手 또는 確認 等を 相對機關의 海外組織網에 要請할 수 있다.

②前項의 入手 또는 確認은 相對機關의 本社 또는 本部를 經由하여 施行한다.

第 4 條 (海外駐在員의 協調)

甲과 乙의 海外駐在員은 相對機關의 任職員이 自己管轄地域에 出張時 業務遂行에 必要한 協調를 한다.

第 5 條 (海外支社 施設利用)

甲과 乙이 新市場 開拓 및 國際協力事業을 위하여 相對方의 海外支社施設 利用 要請時에는 關聯規定 範圍內에서 施設利用의 便宜를 提供한다. 다만, 그 細部事項은 別途 定하는 바에 따른다.

第 6 條 (費用負擔등)

①相對方을 支援하기 위하여 特別히 所要되는

費用은 實費範圍內에서 依賴機關이 負擔하며, 業務
協調에 共同으로 所要되는 費用은 相互 協議하
여 定한다.

②同 費用負擔의 限度와 送金 및 精算方法등에
對한 具體的인 事項은 別途 定하는 바에 의한
다.

第 7 條 (實務協議會)

①이 約定의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實務協議會
를 들 수 있다.

②實務協議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別
途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.

第 8 條 (業務協議)

이 約定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
兩側의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.

附 則

1. 이 約定은 兩側 代表者의 署名日로 부터 效力을 發生하며 有效期間은 2年으로 한다.
2. 有效期間 滿了日 3月前에 어느 一方으로 부터 異議提起가 없을 경우 自動적으로 2年間씩 延長한다.

1984 年 8 月 13 日

大韓貿易振興公社
社長 韓 鳳 洙

海外建設協會
會長 李 承 潤